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1912호
2024년 5월 17일
금요일

공 고

○ 공 고 제 1003 호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 : 남촌어린이공원) 결정(변경) 입안을 도 시 재 생 과 2
위한 주민 공람·공고(정정)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홍보실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4-1003호

도시관리계획[공원조성계획 : 남촌어린이공원]
결정(변경)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·공고(정정)

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 : 남촌어린이공원) 결정(변경)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 합니다.

2024년 5월 17일

남 동 구 청 장

1.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 : 남촌어린이공원) 결정(변경) 입안 내용

○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입안 조서

구분	공원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기 정				변 경				비고
				부지 면적 (㎡)	시설 면적 (㎡)	건축물		부지 면적 (㎡)	시설 면적 (㎡)	건축물		
					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	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
변경	남촌 공원	어린이 공원	남촌동 376	6,256.2	2,198.0	230.49	395.49	5,944.2	2,743.0	93.22	84.42	

○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입안 사유서

구분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변경	남촌 공원	- 부지면적 변경 - 기 정 : 6,256.2㎡ - 변 경 : 5,944.2㎡ - 시설을 변경 - 기 정 : 35.13% - 변 경 : 46.15%	2030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공원 정비

○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입안 총괄표

■ 남촌어린이공원

구 분			변 경 전					변 경 후						비 고		
			부지 면적 (㎡)	시설 면적 (㎡)	건 축 물			공 작 물 (기)	부지 면적 (㎡)	시설 면적 (㎡)	건 축 물				공 작 물 (기)	
					동수 (동)	바닥 면적 (㎡)	연 면적 (㎡)				동수 (동)	바닥 면적 (㎡)	연 면적 (㎡)			
계			6,256.2	2,198.0	2	230.49	395.49	50	5,944.2	2,743.0	1	93.22	84.42	94	부지면적 감 312.0㎡ 증 44기	
공 원 시 설	시 설 계		2,198.0	2,198.0	-	-	-	50	2,743.0	2,743.0	1	-	-	94	증 545.0㎡ 증 44기	
	기 반 시 설	소계	847.0	847.0	-	-	-	-	1,289.0	1,289.0	-	-	-	-	증 442.0㎡	
		도로	573.0	573.0	-	-	-	-	569.0	569.0	-	-	-	-	(감 4.0㎡)	
		광장	274.0	274.0	-	-	-	-	720.0	720.0	-	-	-	-	(증 446.0㎡)	
	조경시설		50.0	-	-	-	-	1	-	-	-	-	-	-	감 50.0㎡ 감 1기	
	휴양시설		275.0	-	1	165.0	330.0	14	141.0	141.0	-	-	-	18	감 134.0㎡ 증 4기	
	유희시설		651.0	651.0	-	-	-	5	910.0	910.0	-	-	-	12	증 259.0㎡ 증 7기	
	운동시설		260.0	260.0	-	-	-	3	145.0	145.0	-	-	-	7	감 115.0㎡ 증 4기	
	설	교양시설		-	-	-	-	-	-	143.0	143.0	1	27.73	27.73	-	증 143.0㎡
		편익시설		-	-	-	-	-	2	115.0	115.0	1	65.49	56.69	-	증 115.0㎡ 감 2기
		관리시설		115.0	115.0	1	65.49	65.49	25	-	-	-	-	-	57	감 115.0㎡ 증 32기
녹지 및 기타			4,058.2	-	-	-	-	-	3,201.2	-	-	-	-	-	녹지율: 53.85%	
시설율(%) (법정 60%이하.)			(2,198.0㎡ ÷ 6,256.2㎡) × 100 = 35.13%					(2,743.0㎡ ÷ 5,944.2㎡) × 100 = 46.15%								
건폐율(%) (법정 5%이하)			건축면적	230.49㎡				건축면적	93.22㎡							
			(230.49㎡ ÷ 6,256.2㎡) × 100= 3.68%					(93.22㎡ ÷ 5,944.2㎡) × 100= 1.57%								

2. 열람기간 : 2024년 5월 31일까지

○ 상기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열람장소 : 남동구청 도시재생과(☎453-2982)

4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